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49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황운하 · 백선희 · 김준형
신장식 · 이해민 · 박은정
서왕진 · 장경태 · 박수현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의 경우 운행·관제 등의 사소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고,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도종사자들은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 등으로 인한 관련 자격의 취소·정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음주 등 행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1조의11제1항 및 제69조의5제1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2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로 한다.

제6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등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제21조의11제1항 및 제6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자 및 철도운행관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 ----- ----- ----- ----- -----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정지 등) ① ----- ----- ----- ----- ----- ----- -----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

1. ~ 8. (생략) ② (생략)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③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정지) ① ----- ----- ----- ----- ----- ----- -----.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